

안전인증소식

[Q&A]**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등이 신규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제개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시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 uestion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문의

당사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인증의 범위는 정격 용량이 5kVA 이하의 제품이 안정인증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2009년 1월 1일부로 전부 개정이 되어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인증범위가 정격용량이 5kVA이하에서 10kVA 이하로 확대 변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야 됨을 잘 알지만 금번의 경우는 갑작스런 변경으로 업무에 많은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규를 개정할 때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전기용품 안전인증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관련된 시행 규칙이나 관련 조항은 없는지요?

A nswer 귀하게서 문의하신 5kVA초과 10kVA이하의 무정전전원장치는 2008년 12월 31일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정보기기류 KC제도 관련 문의

당시는 일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캐너는 바뀐 법령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2008년 이전 법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율안전확인대상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같이 자체검사와 그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nswer '09.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원자재·공정 검사와 제품시험 등의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와 관련된 서류비치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등을 위해 자체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Q uestion 전기요 및 전기방석 제조관련 문의

2008년도 기술표준원 세미나를 통해서 발열체 온도와 표면온도 개정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발열체 온도 및 표면온도 이상으로 취소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11절 온도 상승시험(표101-최고온도) 발열체 및 전기요 등의 온도 값이 그대로인지 변경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nswer 11절 온도상승시험(표 101-최고온도)는 기술표준원 고시 2008-0393호(2008.7.15) 이후로 변경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협회(02-890-8300) 및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